#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 2021-38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1. 6. 10.)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 법령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4조)

(현행)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변경)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나.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맞게 목적 변경함(안 제1조)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사항 등 불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19조)

1) 적용범위, 식재기준, 보고, 관리대장, 시행규칙

라.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및 비용부담 조문 분리(안 제13조·제14조)

마.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함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생활림

(변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생활숲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27.~3.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제5조제3항)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제5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조 제목 “(회의 및 수당)”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

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8조·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써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 <삭 제> |
|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 |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 |

| | |
|---|---|
|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br>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br>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br>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br>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br>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br>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br>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제8조(회의 및 수당) ①~② (생략)<br>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br><삭 제> |
| 제10조(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br>1.~6. (생 략)<br>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br>1.~5. (생 략) | 제10조(협의)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br>1.~6. (현행과 같음)<br>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br>1.~5. (현행과 같음) |
| 제11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 | <삭 제> |

| | |
|---|---|
| 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br>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도시림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br>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br>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 |
|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br>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br>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br>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br>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br>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 |
| 제14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br>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 제17조(보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 | <삭 제> |

| | |
|---|---|
| 화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br><br>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4조 관련)

| 유형 | 산정기준 |
|---|---|
| 1. 벌목, 나무줄기 자르기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과도한 가지훼손이란 나무줄기의 3분의 1 이상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무비용의 20퍼센트 + 실제 작업비 |
|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실제 작업비 |
| 4.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가. 원인자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br>1) 군수의 승인 및 감독<br>2)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br>나. 군수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원인자가 나무심기 및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 5. 제거하는 경우 |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대체 나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br>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대체 나무심기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제거비 |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모든 경비)하여 산정

2) 나무 비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서식]

## 가로수사업(나무심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성 명(명칭)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연락처 | | |
| 사업 대상 | 가로수 위치 | | | | | |
| | **나무 종류** | | 규격 | **높이:**<br>**가슴높이지름:**<br>**나무밑동지름:** | 수량 | **그루** |
| **사 유** | | | | | | |
| 작 업 방 법 | | | | | | |
| 작 업 기 간 | | 년 월 일부터<br>년 월 일까지 ( 일간) | | | | |
| 부담**비용** | 금 액 | 금 원정( ) | | | | |
| | 납부기간 | | | | | |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